

1. 호당대출한도

- 일반가구 :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 1.2억원, 수도권 외 8천만원
- 2자녀 이상 가구 :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 2.2억원, 수도권 외 1.8억원
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
① 신규계약

- 일반가구 : 전세금액의 70% 이내
-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
② 갱신계약

- 일반가구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% 이내
-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
3. 담보별 대출한도

-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- 본인 부채금액의 25% -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
*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

연간소득	연간인정소득
무소득자 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	45백만원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	연간소득×3.5
20백만원 초과	연간소득×4.0

*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